

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6-231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시 : 2012. 10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개정이유

연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연천군민의 박물관 관람시 동두천 시민과 같이 관람료의 50%를 감액함으로써 연천군과의 교류를 확대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주요내용

가. 연천군민에 대한 관람료 50% 감면(안 제7조)

개정조례안 : 덧붙임

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상황 : 해당없음

입법예고결과

- 입법예고(2012. 7. 26. ~ 8. 14.) 결과 : 의견없음

부서협의결과 : 해당없음
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 (※관련공문 별첨)

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동두천시조례 제1122호

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”를 “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동두천시민임을”을 “동두천시민 및 연천군민임을” 로 한다.

제6조, 제10조 및 제15조제7항 중 “각호의 1”을 각각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5조제8항 중 “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 로 한다.

제16조 중 “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「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시설사업소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시설사업소장 김재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박물관팀장 송명석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주무관 이광묵 860-3333